
2021년도 새만금개발공사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0. 03.

새만금개발공사

제 출 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이 보고서를 “2021년도 새만금개발공사 인권영향평가”
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0. 03.

한국경영인증원

- 목 차 -

I. 인권경영 환경분석 및 현황	3
1. 인권경영 정책 동향	3
2. 인권경영 구축 사례	11
3. 공사 인권경영 운영현황	17
II. 인권영향평가 실시	20
1. 인권영향평가 실시개요	20
2.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선정	23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24
III. 인권영향평가 결과	27
1. 인권영향평가 종합	27
2. 기관운영 평가결과	28
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30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33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6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38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40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42
분야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45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47
분야 9. 환경권 보장	49
분야 10. 소비자 인권 보호	52
분야 11. 직장 내 인권 보호	54
3. 주요사업 평가결과	58
IV. 인권경영 주요 개선과제	64

I

인권경영 환경 분석 및 현황

1

인권경영 정책 동향

- (가) 국제 인권경영 동향
- 인권경영은 기관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임직원, 공급사, 협력업체, 현지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요인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존중하여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 197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관련 연구·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국제사회 전반에 중요성 및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국제사회 인권경영 추진현황]

- 유엔인권위원회(UNHRC)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채택 (2011년)
-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3자 협장 발표 (1977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1976년)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 GRI, OECD Guideline, UN Global Compact 등 인권경영 표준화 확대
 - 국제연합의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 국제인권규범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Initiative)가 표방하는 기준과 절차가 갖는 의미를 분석·정리·체계화한 결과물
 - 기업들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기업에 인권존중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들 스스로 실천, 점검해야 할 의무(Due Diligence)를 강조하고 있음

[국제기구의 윤리·인권 가이드라인 요약]

구분	내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이 경제·환경·사회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안내 - 한국 등 34개 OECD 회원국 소속의 다국적기업 적용 권고 - 사회, 윤리 및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윤리)가치선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인권파트 신설 • 인권리스크 심각성 주의 강조 • 고용 및 노사관계 인권보호 강조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ISO 26000 제정 -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윤리적 행동 강화 • 인권영향평가 및 리스크 대응 •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행 • 여성 등 취약집단 차별금지, 노동기본권리 보호 강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이행지침 최종 승인 - 기업과 인권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글로벌 행동기준 제시 - 인권 보호, 존중, 구제 3대 축으로 구성 - 인권선언, 리스크 평가, 정보공개 권고 - 각 항목별로 31개의 기본지침과 운영지침 제공
UN 글로벌 컴팩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출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기준 제시 - UN과 기관(기업)을 직접적 연결하는 플랫폼 -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며 강제성 없음 - 기업회원 9,500개社 가입 중, 기업이 작성한 정보공시보고제도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 증진 도모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방지 분야의 10대 원칙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 국제적으로 선언 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 원칙 2. 사람이 인권 유린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원칙 3.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해야 한다. •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반드시 철폐 한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5. 아동 노동에 대한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폐지를 수행한다. • 원칙 6. 고용 및 직업에서의 어떠한 차별도 철폐 한다. • 원칙 7.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원한다. • 원칙 8. 환경 책임을 증진하기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 원칙 9.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한다. • 원칙 10. 기업은 강요와 뇌물 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해야 한다.
ILO 다국적기업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 제정, 2017년 3월 개정 - 개발도상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활동 중 노동, 사회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력 필요 - 고용, 훈련, 노동조건, 생활조건, 노사관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기준 준수, 고용 기회 대우의 균등 • 노동조건과 노동안전위생 확보 • 건전한 노사관계 촉진 강조 • 노동권에 대한 영향평가 조치 신설
GRI 지속가능 경영보고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경제 · 환경 ·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고 -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보고 기준으로 활용 - 윤리적, 합법적 행위에 대한 조직 내외부 자문 매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검토 대상 사업장 •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 • 인권 심사 시행을 포함한 계약 체결 • 동등한 기회 제공, 차별금지 • 아동노동, 강제 노동 금지 정보 보고

(나) 국내 인권경영 동향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활동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으며, 본 체크리스트는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실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항목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 2018년, 정부의 인권경영 정책 수립·발표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2018~2022, 법무부)’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보호의무로 강조하고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대한 과제를 공공기관에 촉구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전 세계 39개국이 수립·시행 중임
 -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8, 국가인권위원회)’을 발표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를 권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인권경영 실행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860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 중

□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2018. 12.)을 통해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도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기관의 인권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비중을 높이고, 평가내용을 구체화 함
※(‘17)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내 인권경영 일부반영→(‘18) 별도 윤리경영 지표 신설(3점) 및 인권경영 내용 구체화(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 노력)

[정부 부처별 인권경영 정책]

정부 부처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14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16년) -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16년) -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18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내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인권증진 활동 평가 실시 -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내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 및 배점 확대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회 •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관계부처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사항 수용('18년) - 갑질, 채용 비리 등 인권피해에 대한 내부감찰 관리 감독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내 갑질 금지 규정 신설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보급 -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피해 회복 지원

□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을 적용하여 인권경영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내용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자신의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 존중해야 함- 기업이 보호·존중해야 하는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것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각종 인권규범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
운영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환경권, 소비자인권 등 10개의 각 이슈별 ‘원칙’을 제시- 원칙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이슈별 규범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이슈별로 큰 원칙을 읽어서 이해한 후 질문을 읽기- 질문에 대한 답은 5가지이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해당 답변에 표시- “아니오”로 나오는 항목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된 항목에 대해 사전 조치하기 위한 것(취약지점을 발견하는 도구)- 신뢰성을 위해 노조나 여타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

□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 2020년 6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고,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을 발표함
- 모범거래모델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와 더욱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임
- 많은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중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에 취약한 상황이며, 주요사업 인권영향 평가지표에 모범 거래모델의 주요 지표를 반영하여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음

□ 직장 내 인권보호 및 구제강화 법률 시행

- 2019년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시행 및 관련 법규 개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19년 7월 시행 등 법률로써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등 직장 내 인권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되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국내외 정책과 제도는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경영 추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는 환경변화에 따라 인권경영 체계 점검 등을 통한 인권경영 고도화가 필요함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글로벌 정책 및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조 - 인권영향평가 및 리스크 대응 강조 - 인권침해 구제제도 실행 권고 - 정보공개 권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인권경영 활동이 취약한 협력회사, 자회사 등 공급망 관리, 환경권, 지역주민 보호 등 확산방안 모색 필요 - 구제제도 체계 점검 및 개선, 홍보 - 정보보호 대상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기준 필요
정부 정책 및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행 권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 경영 노력과 활동 평가 실시 - 공공기관의 갑질, 성희롱, 괴롭힘, 채용비리 등 인권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권고 -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활동 계획 수립 및 홍보 필요 - 내부 규정 및 지침 내 인권경영 위원회, 인권영향 평가, 구제절차 관련 체계, 세부 계획 및 내용 정립 필요 - 공공기관 인권침해사례 및 이슈등을 고려하여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실시 필요 - 인권경영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개, 홍보 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권경영 분야 성과평가 대비 필요 - 인권경영 정보공개 기준 마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근로기준법 내)으로 근로자 인권 보호 체계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 조치 강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재발방지 교육 필요 - 구제절차 수립 및 체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대응 매뉴얼 등 마련 필요

2 인권경영 구축 사례

(가) 인권경영 실시 동향

□ 해외/민간기업 동향

- EU는 2018년부터 5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인권을 포함한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를 법제화했으며, 프랑스는 2017년 50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한 '인권실사'를 법제화했고, 스위스, 독일 등의 유럽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아직 기업의 비재무정부 공개나 '인권실사'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삼성은 2018년 노동인권 감독관을 선임하여 베트남 사업장에 대해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LG화학은 미국 IBM 및 포드, 중국 화유 코발트 등의 기업과 손잡고 코발트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권 침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공기관 동향

-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기업활동으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가교로서 공공기관의 공급망에 포함된 민간기업으로 인권존중 책임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범 적용을 지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공시와 연계하여 대외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에 이른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	인권경영 추진체계 구축	▶	사회적 가치실현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지정 시범 적용기관으로서 인권경영 체계 구축 전과정 수행 중 ▷국민연금공사, 한국 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내·외부자문을 통한 체계 구축 진행 ▷한국교육개발원, KIET, KIC, KISD, aT, EX, IIAC, KOTRA, 철도시설공사 등		기관 '사회적가치체계'에 인권경영 반영, CSR 보고서 형태로 대외 공개 ▷IIAC, aT, LH공사, 중소 기업진흥공사, 한전KDN, 국민체육진흥공사 등

(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시스템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권경영 선언문을 제정하여 인권경영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전담부서 설치가 바람직하지만 기관사정에 따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인권경영 전담자로 임명할 수 있음

- 인권경영 실행지침(규정) 제정

- 인권경영 실행목적, 체계, 위원회 구성과 운영, 영향평가, 실태조사, 이행사항,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

-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

- 기관 인권경영 정책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로 최고경영진 포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선언문을 작성하고 인권경영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인권경영 선언문을 확정하고 공표함

- 인권경영 선언문 작성

- 기관 인권경영 현황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선언문 초안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 검토 요청
 - 외부전문가, 자문기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기관 공통 포함내용
 - 지지하는 인권기준, 비차별 또는 차별금지 원칙
 -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강제 및 아동 노동금지 등 노동권
 - 반부패, 투명경영, 실천 및 점검의무
 - 직원, 소비자, 공급망,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인권존중
 - 피해자 구제
 - 업종에 따라 특정 인권 이슈 강조

□ 인권경영 지침 및 현장

○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함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경영일반원칙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5장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의 •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상의 차별금지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안전 및 보건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지역주민인권보호 • 환경권 보장 • 고객인권보호 • 구제조치의 노력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현장 • 전담조직 •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및 기능 • 구성 • 소집 및 회의 • 수당 • 의견청취 • 비밀누설금지 • 위원 위촉 해제 • 이익충돌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6장 인권의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책임관 지정 • 인권침해구제절차 • 결정서작성 및 송부 • 신고인의 신분보장

□ 구제절차

○ 기관에 가장 적절한 구제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 내 기존 고충처리 제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제도를 마련함

□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파악한 인권 리스크와 인권 침해이슈를 구제절차 형식에 반영

□ 구제절차 수립 및 시행

- 내부 구제절차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또는 ‘인권옴부즈맨’ 활용을 권장하며, 인권경영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제기구로 활용하거나 산하에 인권침해 구제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구제기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지원을 받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 전담자 임명이 바람직하나, 유사 업무 담당자를 인권옴부즈맨으로 임명가능
- 구제절차 운영에 관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수립 (내부지침,외부구제절차)
- 구제절차 이용안내, 진정인의 개인정보보호조치, 장애인 접근성 향상, 구제절차 교육 방안 마련
- 구제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정접수, 구제시행

(다) 사업 분야 인권 이슈

□ 인권침해 사례 분석

- 국내 기반시설 및 기타 관련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정감사 등의 외부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 이슈가 확인됨
 - 비정규직근로자 차별문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조직 내 인권침해, 단체교섭 해태 및 거부, 파견 직원에 대한 업무 떠넘기기와 같은 강제노동, 주변 지역 주민, 기관들과의 갈등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수많은 용역사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주요 용역사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용역사 선정,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한 용역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등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분야’에 대한 인권경영 실천이 요구됨
 - 협력사, 자회사가 없는 경우라도 협력사의 개념을 확대하여 장기간 계약관계에 있는 용역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협약, 계약 시 서약 및 인권보호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급망 관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지하도상가, 관광, 주차·상수도, 레져·스포츠, 대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광범위한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행하여야 함

[유관기관 인권침해 관련 기사 분석]

분야	사례 내용
고용상 차별	<p>1) 채용비리: 부정청탁 · 채용서류조작, 특혜 채용 등(2021, A도시공사 사례)</p> <p>2) 공공기관 채용비리 · 갑질 무더기 적발 (2018, G도시공사 등 사례)</p>
조직내 인권침해	<p>1) 폭력행사: 언어 및 신체적 폭력 행사, 징벌적 교육훈련 (2016년 D도시공사 노조원 폭행 사건)</p> <p>2) 성인권 침해: 성희롱, 화장실 몰카 등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가해자 재발 방지 미흡 (2017년 H도로공사 성희롱 등 근무태만 처분 88건), 농성 중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2019년 농성 중인 톨게이트의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물품검사, 상의 탈의 중 채증 등 성희롱)</p> <p>3)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상사의 업무 외 지시(2018년 H도로공사 인턴에게 ‘일찍 출근해서 커피 타라’는 상사의 지시 등)</p>
노동3권 침해	<p>1) 노조 설립 · 활동 방해</p> <p>2)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한 처분</p> <p>3)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p>
강제노동	<p>1)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 강제(2020년 N도시공사 코로나 발열체크 업무 강제 배정 논란)</p> <p>2)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초과노동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초과근무, 재택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분쟁)</p>
지역주민 인권침해	<p>1)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유출</p> <p>2) 지역사회교육기관가 도로공사 확장공사를 두고 갈등발생(2020년)</p>
환경권 침해	<p>1) 주요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지역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행위</p> <p>2) 환경정보 공개 미흡(환경 관련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부당한 거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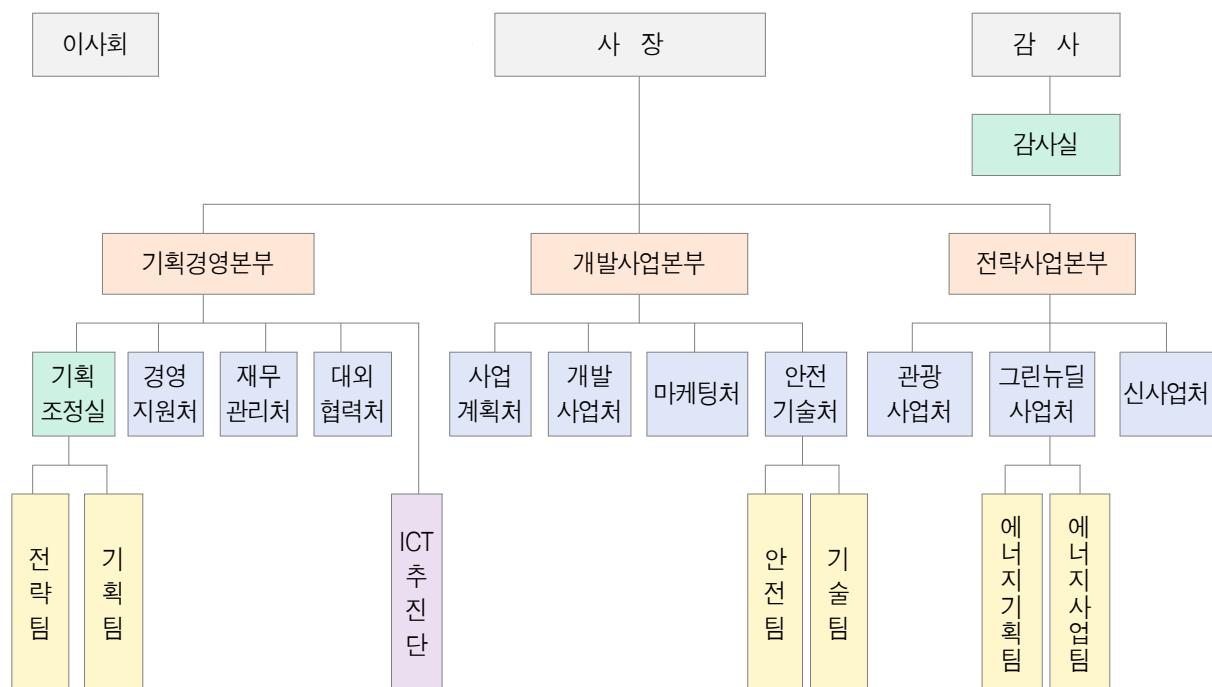
분야	사례 내용
공급망 관리	1) 외주 · 협력업체 근로자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미흡 2) 외주 · 협력업체 대상 비용분담 강요
안전사고	사업 시행 · 운영 시 산업재해 발생

3 공사 인권경영 운영 현황

(가) 공사 소개

-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던 새만금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출범하였음
- 공사는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어 가는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마트수변도시 건설,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사의 조직은 2021년 10월 현재 ‘기획경영본부’, ‘개발사업본부’, ‘전략사업본부’ 등 3본부 2실 10처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실’, ‘기획조정실’, ‘사업계획처’, ‘신사업처’, ‘ICT 추진단’ 등 13개의 부서가 운영되고 있음

[3본부 2실 10처 1단 6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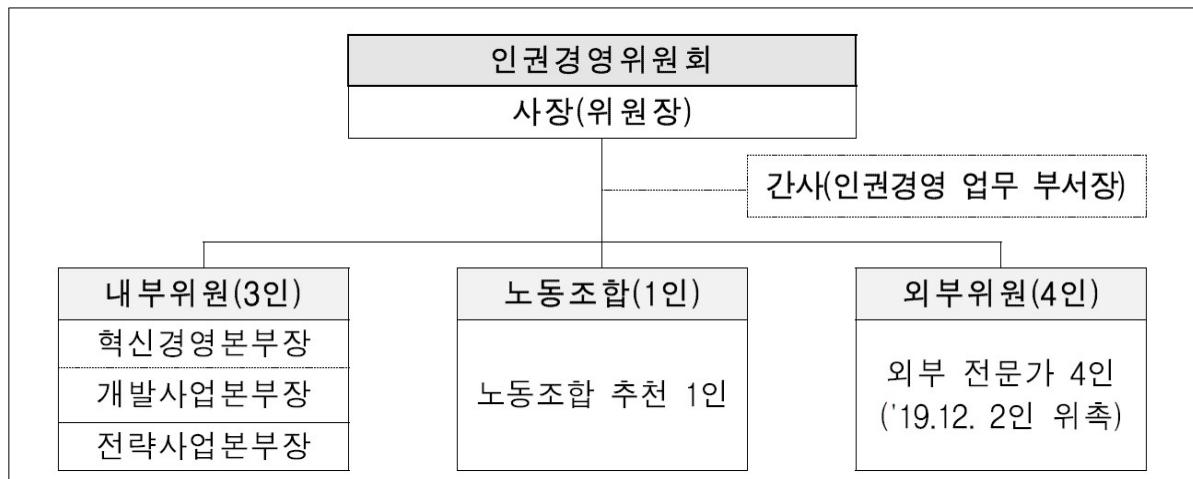
- 공사의 미션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이며 “꿈을 현실로 채우는 새만금 Creator”를 비전으로 하고 있음
-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는 “Friendshi(소통), Ace(최고), Speed(신속), Teamwork(협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수변도시조성 660만m²’,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700MW’, ‘관광레저 개발공간 확대 200만m²’, ‘좋은 일자리 3만개 창출’ 등 7가지의 경영목표를 수립하였음
- 공사는 ‘속도감 있는 도시개발 추진’, ‘친환경 미래성장동력 확보’, ‘새만금형 가치 창출’, ‘조직역량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경영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

(나) 공사 인권경영 운영 현황

□ 인권경영 추진현황

- 공사는 2018년 10월 설립 이후 2020년 인권경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인권경영현장’을 마련 및 선포하여 대·내외에 임직원의 인권경영 참여 의지를 표명하였음. 또한, 경영활동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왔으며,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을 제정하였음

[공사의 인권경영 추진위원회]



* 혁신경영본부장 명칭 변경(혁신경영본부장 → 기획경영본부장)

[공사의 인권경영 추진 활동]

연도	상세 내용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매뉴얼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인권경영선포식 개최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규정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위촉 및 개최- 인권경영 추진 기본계획 수립

II

인권영향평가 실시

1

인권영향평가 실시개요

□ 인권영향평가 실시 가이드¹⁾

- 인권영향평가란 조직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며, 이러한 노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포괄적 절차를 뜻함
 - 포괄적 절차에는 실재적·잠재적 인권리스크에 대한 평가, 그 결과를 조직 운영과 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과정,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 모든 절차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인권리스크는 통상적 ‘리스크 관리’에서 전제하는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위험성 외에 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위험성을 내포함
- 조직은 적절한 인권실사를 수행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완화할 수 있음을 물론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인권실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호적인 조직평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권침해 및 차별을 야기하거나 연루되지 않는 한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조직의 규모 및 가용자원, 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인권리스크의 수준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조직은 현실 가능한 선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실시하기를 권장함
- 인권영향평가는 일시적인 절차가 아니라, 조직의 인권경영과 책임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연속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함

1) 2019년도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의 인사실사 과정과 절차 가이드를 재정리함

□ 주체 및 범위

- 평가기간 :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4일

‘21. 7. 14 : 인권영향평가 Kick-Off
‘21. 8. 18 : 주요사업 평가대상 확정 및 지표개발
‘21. 8. 19 : 인권영향평가 지표교육
‘21. 8. 31 : 공사 내부 자체평가 시행
‘21. 9. 02 :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위원 현장실사
‘21. 10.02 :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21. 10.03 : 최종 보고서 제출

- 평가주체 : (내부) 새만금개발공사, (외부) 한국경영인증원

공사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과 진단 및 평가 실시

- 평가범위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기초로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주요사업) 공사의 사업수행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 평가목적

- 공사의 경영활동이 임직원, 공급업체, 지역주민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예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인권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존중 경영에 기여

□ 평가방법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환경분석→ 체크리스트(안) 작성 → 체크리스트 검토·확정 →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제출 → 경영진 심의 →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표와 원칙,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운영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별 객관적 증빙자료와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였으며, 표준화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제공하여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최소화함
- 인권경영 추진 담당자 및 관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 워크숍과 지표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기관운영 및 주요 사업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평가지표 확정
- 내부 자체평가를 거친 후 외부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 “예”로 응답한 지표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아니오” 답변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개선과제 도출 중점)
-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지표의 특성상,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지표에 대하여 실무담당자 외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예를 들어, 고용상 비차별 분야 중 비정규직의 비차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실무담당자 평가→비정규직 평가→외부 전문가 평가의 절차를 거침)
-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주도 하에 현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 협력부서(관련부서)에 배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수정의견을 반영
- 최종 취합된 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함

2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선정

□ 주요사업

- 새만금 매립사업 선정

□ 주요사업 선정 기준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의하면 주요사업 선정 시 중점 추진사업 여부, 이해관계자 효율성, 지역이슈 연계성, 파급 영향력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사업 선정 목적

- 운영업체, 종사 근로자,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의 특성상 사업수행과정에서 인권존중기반이 구축되어 있는지, 사업추진상 차별이 있는지, 이해관계자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인권침해요소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점검 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업 선정 사유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주요사업 선정 시, 기관의 주력사업 또는 대표사업 여부, 신규 사업 여부, 경영활동 전반이 포함 여부, 앞으로 수행할 중요사업 여부, 기관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 공사는 2021년 최초 외부기관을 통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새만금 매립사업’ 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함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 평가체크리스트 지표 개발 및 확정

- (기관운영) 2021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직장 내 인권보호 1개 분야 1개 항목 5개 지표를 추가하여 최종 11개 분야 36개 항목 173개 세부지표 확정
- (주요사업) 운영업체, 종사 근로자,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 매립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7개 항목 19개 세부지표를 신규 개발

□ 항목수 및 지표수

(기관운영) 11개 분야 36개 항목 173개 지표

구분	분야	항목수/지표수	구분	분야	항목수/지표수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5개/30개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개/10개
2	고용상의 비차별	4개/17개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개/10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개/16개	9	환경권 보장	4개/18개
4	강제노동의 금지	2개/11개	10	소비자 인권 보호	3개/15개
5	아동노동의 금지	2개/14개	11	직장 내 인권보호	3개/15개
6	산업안전보장	4개/17개			

(주요사업) 1개 사업 5개 항목 25개 지표

구분	분야	항목수/지표수
1	새만금매립사업	7개/19개

□ 기관운영 평가 지표

연번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 선언	3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체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17
		고용상 남녀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6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4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11
		자회사, 협력기관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5	아동노동의 금지	연소자 고용 금지	14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6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17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
		모니터링 실시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10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8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비상계획수립	
10	소비자 인권보호	소비자 보호 위한 법령 준수	15
		제품 결함 시 조치	
		소비자 사생활 보호	
11	직장 내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5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장애인 근로자 보호	

□ 주요사업 평가 지표

연번	사업	항목	지표수
		사업의 인권체제	
1	새만금 매립사업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협력사 인권보호	
		지역주민 인권보호	
		공정운영	
		환경보호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19

III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1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 국제사회와 정부, 그리고 사회는 조직의 경영과 사업활동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존중과 인권경영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운영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2018년 설립 이후 인권경영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음
- 공사는 도시건설,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 등 등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사, 지역주민, 지자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실질적 인권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공사의 인권경영 실천에 향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임
 - 이에 공사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경영 담당조직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공사는 2021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현장실사 방식을 채택하여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도를 높임
- 2021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종합 달성을 96.3점으로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에서 ‘보완필요 및 아니오’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11개의 지표가 도출되었음
 - 해당 분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련 법령과 국가정책, 지침에 따라 개선 가능한 과제로 기관 자체의 노력과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임
- 2021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주요사업이 ‘새만금매립사업’으로 종합 달성을 97.4점으로 대체적으로 우수한 편이나,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에서 ‘보완필요’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가지 도출되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함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가) 종합 점수 : 96.3점 (296점 중 285점 획득)

-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96.3점으로 우수한 상태
-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에서는 일부 보완 필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점수



No.	분야	점수			
		배점	조정배점	득점	환산점수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60	60	59	98.3
2	고용상의 비차별	34	32	32	10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32	28	28	100.0
4	강제노동의 금지	22	20	20	100.0
5	아동노동의 금지	28	10	10	100.0
6	산업안전 보장	34	34	31	91.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0	16	14	87.5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0	18	18	100.0
9	환경권 보장	36	34	31	91.2
10	소비자인권 보호	30	14	14	100.0
11	직장 내 인권 보호	30	30	28	93.3
총점		346	296	285	96.3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나) 기관운영 점검 집계결과

- 총 173개 항목 중 예 137개, 아니오(미실시) 0개, 보완 필요 11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25개로 집계됨
 - (미 실 시) 없음
 - (보완필요)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직장 내 인권 보호’ 등 일부항목의 보완필요 사항 발생
 - (정보없음) 없음
 - (해당없음)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 인권 보호’ 등 일부항목은 점검 일 현재 공사 활동과 직·간접적 해당사항이 없음
- (개선과제) 지표별 미이행 과제(‘아니요’, ‘보완필요’, ‘정보없음’)에 대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예’로 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잠재적 인권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5개 항목)	29	1	0	0	0	30
2	고용상의 비차별(4개 항목)	16	0	0	0	1	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4개 항목)	14	0	0	0	2	16
4	강제 노동의 금지(2개 항목)	10	0	0	0	1	11
5	아동노동의 금지(2개 항목)	5	0	0	0	9	14
6	산업안전 보장(4개 항목)	14	3	0	0	0	17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3개 항목)	6	2	0	0	2	1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2개 항목)	9	0	0	0	1	10
9	환경권 보장(4개 항목)	14	3	0	0	1	18
10	소비자인권 보호(3개 항목)	7	0	0	0	8	15
11	직장 내 인권 보호(3개 항목)	13	2	0	0	0	15
합 계		137	11	0	0	25	173

(다) 기관운영 분야별 상세 평가

◆ 분야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운영현황)

- 공사는 10개 항으로 구성된 인권경영헌장을 2020년 1월 마련하고 동시에 선포식을 통해 공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공포함
- 공사는 2018년 공사 설립 이후 2020년에는 자체적인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 이래 2021년부터 외부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 공사는 인권경영헌장 제정과 함께 인권경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인권경영매뉴얼 제정,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을 비롯한 인권경영체제구축은 공사 설립 3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인 실시에 의해 정량, 정성적인 성과 평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
- 인권 감시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작동되고 있으며 부정적 인권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원칙을 갖고 있으며 협력사에 대한 인권 대응도 포함하고 있음
- 구제절차는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와 제보가 용이하며 타 구제기관 이용에 대해 조력한다는 원칙도 갖고 있음

(권고의견)

- 인권경영헌장은 국내외 인권 이슈의 변화에 대응하고 공사의 이해관계자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이슈의 대두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정기적인 개정을 명문화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인권존중정책 선언	91.7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0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0	
4	인권경영 성과	100.0	
5	구제절차 마련	100.0	
평균		98.3	

□ 분야1. 항목별 결과

1.1) 인권존중정책 선언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개발공사는 2018년 10월에 설립되었음. 설립 후 1년 여 경과한 2020년 1월에 인권경영현장 공표와 함께 인권경영을 선포하였음 ○ 선언문에는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인권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안전, 개인정보보호,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 선언문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인권경영의 날을 정하여 인권퀴즈를 내면서 임직원에 대한 인권경영 관심을 제고하고 있음 ○ 인권경영선언문은 2021년 하반기 중에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정 이후 지금까지는 개정이력이 없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규정에 “정기적인 개정검토” 문구를 명시하며 공식화하기 바람. 개정 검토 및 개정을 통해 국내외 인권 이슈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해관계자의 변화에 따른 이슈 변경 내용을 새로 담을 필요가 있음

1.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2020년 5월 최초 인권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1년 8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회의 평가 공히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회사 및 협력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평가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1.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인권경영헌장 제정에 이어 인권경영규정 제정, 인권경영매뉴얼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그리고 전 임직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음. ○ 공사는 주로 설문조사 방식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 징후 발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인권침해 대응준비도 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1.4) 인권경영 성과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성숙도 설문조사에 의한 data를 통해 정량적 평가를 하고 data의 변화 추이를 지속 관리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음. ○ 인권경영의 성과는 인권경영위원회 및 경영보고를 통해 보고되며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 ○ 설립 3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공사의 인권경영체제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비록 2회의 인권영향평가지만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추이분석이 가능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1.5) 구제절차 마련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구제절차는 인권경영규정 제6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의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인권침해 문제를 신고, 제보할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구제절차의 결과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피해자가 외부 구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운영현황)

- 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취업규정, 교육훈련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따라 고용상 비차별에 대해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
- 공사는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이 없으며, 향후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고용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준수할 예정
- 공사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현재 30%대 선이나 최근 여성근로자 입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고 있고, 채용 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내용을 인사규정 및 교육훈련규정에 반영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음
- 공사 남녀 근로자 종사 비율은 7:3(남:여)로 행정본부는 여성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개발 및 부동산 등의 현장업무가 많은 사업본부의 경우에는 남성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임

(권고의견)

- 최근 공사의 채용되는 여성근로자 비율은 낮지 않은 편이나 성별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이 없도록 지속해서 주의해야 하며, 현재 3급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관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추후 비정규직 운영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고용상 비차별	100.0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0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00.0	
평균		100.0	

□ 분야2. 항목별 결과

2.1) 고용상 비차별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인사규정, 교육훈련규정에 고용상의 차별금지를 명시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있음 ○ 공사는 복리후생을 근로자간 차별없이 부여하고 있음 ○ 공사는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등을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규정상 차별적 요인은 없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2.2) 고용상 남녀 비차별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남녀 고용 비중은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이 30% 정도로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작년 채용된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가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을 만큼 남녀 차별적 관점 없이 채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 공사는 총 14명의 관리자 중 2명의 여성관리자가 있으며, 3등급 '여성' 근로자 대상 여성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타 기관 대비 우수함 ○ 그 외 공사는 고용상 남녀 비차별에 관해 교육훈련규정, 인사규정, 보수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3급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관리자 교육을 유지하여 여성근로자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은 권장함

2.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법 위반 사항이 없음○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비정규직이 없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비정규직 운영시 관련법령 준수 등을 통해 차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함

2.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는 취업규칙에 지역·혈연·성별·신앙·출신 등으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공사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이 없어 해당 내용은 공사와 해당없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운영현황)

- 공사는 1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섭과 함께 실무회의를 실시하여 노사간 소통이 원활함
- 단체협약을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현재 1개의 노조가 존재(2019년 설립)하며, 유니온숍을 적용하고 2년 주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노사협의는 노사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고 있으며, 통근버스 시범운행을 노조 요구에 따라 시범운영하는 등 노사간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공사는 결사·자유의 보장, 자유로운 노조활동의 보장, 단체교섭보장을 단체 협약에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thead> <tr> <th>No</th><th>항 목</th><th>계</th></tr> </thead> <tbody> <tr> <td>1</td><td>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td><td>100.0</td></tr> <tr> <td>2</td><td>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저우 금지</td><td>100.0</td></tr> <tr> <td>3</td><td>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td><td>100.0</td></tr> <tr> <td>4</td><td>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td><td>N/A</td></tr> <tr> <td colspan="2">평균</td><td>100.0</td></tr> </tbody>		No	항 목	계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0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저우 금지	10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0	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N/A	평균		100.0
No	항 목	계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0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저우 금지	10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0																			
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N/A																			
평균		100.0																			
No	항 목	계																			
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0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저우 금지	10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0																			
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N/A																			
평균		100.0																			

□ 분야3. 항목별 결과

3.1)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 공사는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노조설립(2019년) 이후에 연 4차례 이상의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협을 위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3.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단체협약에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항목들을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3.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조합활동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권을 보유한 단체임을 명시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자 대표에게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음 ○ 공사는 공사의 대표가 조합 정기회의 참석하는 등 조합과의 소통활동이 우수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3.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관으로 노동조합 부재에 대한 대안적 조치는 인권문제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운영현황)

- 공사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직원채용 시행세칙 등에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공사는 협력사, 자회사 등의 국내활동 외 외국활동은 없으며, 협력사 근로자 및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제노동 사항 점검과 강제근로와 관련된 업체를 조회하여 부정당업체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평가요약)

- 공사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직원채용 시행세칙 등에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과 강제근로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 공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사는 없으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협력회사(SPC)에 대해 수시 현장방문하여 임금체불이나 강제노동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물품 구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우선 구매를 진행하고 부정당업자 여부 조회를 진행하며 부정당업체로 조회된 업체의 경우 계약 미체결하는 등 자회사나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활동도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 향후에도 자회사, 협력사로 인한 인권 문제 이슈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회사, 협력사의 인권문제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고도화 및 체계화가 필요

결과 그래프		점수	
No	항 목	계	
1	강제노동의 금지	100.0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00.0	
평균			100.0

분야4. 강제노동의 금지

No	항 목	계
1	강제노동의 금지	100.0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00.0
평균		100.0

□ 분야4. 항목별 결과

4.1) 강제 노동 금지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 및 자유로운 퇴근'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4.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에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 협력회사가 없으며, 협력회사의 경우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임금체불 및 강제노동에 대한 사항 점검 진행하고 있음○ 공사는 물품 구매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의 우선구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인권문제 예방을 위해 협력사의 부정당업자 여부 조회를 진행하여 하며 부정당업체로 조회된 업체의 경우 계약 미체결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운영현황)

- 공사는 채용공고에 18세 미만은 지원 자체를 불가하게 공고하고 있어 아동의 채용 및 노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평가요약)

- 공사는 채용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아동이 근로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실제 아동/연소자의 채용과 근로자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0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N/A)	N/A	
평균		100.0	

분야5. 아동노동의 금지

The chart has a scale from 0.0 to 100.0. A single blue bar is at the 100.0 mark, labeled '1. 연소자 고용 금지'.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N/A)

□ 분야5. 항목별 결과

5.1) 연소자 고용 금지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는 채용공고에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함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여 채용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5.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는 채용공고에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함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여 채용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운영현황)

- 공사는 산업안전법과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소별 필요한 안전보호구 지급 관리하고 있음
- 공사는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조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보건관리 위탁계약 체결하여 산업보건전문가 정기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음
- 공사는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5종에 대해 MSDS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자 교육 실시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안전과 생명을 경영의 최우선가치 정립과 무재해 개발사업 실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위험요인 발굴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등 공사가 추구하는 안전 경영철학을 제시함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 수립 등 공사의 안전 정책 수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을 2020년 11월 인증받고 운용 중에 있음

(권고의견)

- 근로자의 산업안전보장 분야의 개선과 정착을 위하여 안전책임 보고서에 다양한 활동이 계획되고 있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으로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성과관리 필요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작업장 안전	10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75.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90.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0	
평균		97.1	

분야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점수
1. 작업장 안전	100.0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75.0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90.0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00.0

□ 분야6. 항목별 결과

6.1) 작업장 안전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의 위생 및 보건관리 업무는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정기적 인 점검 위생관리 수행하고 있음○ 공사의 작업장 안전보장부분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활동 수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난 안내도 부착 운영하고 있지만 각 표지판에 현재 위치와 피난 대피로 표기 할 것을 권고함

6.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의 사내규정에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기준들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공사 방문 및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 환경을 고려하여 직무 변경 및 근무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는 사내 절차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제도 개선 필요함○ 장애인 방문 시 다른 층으로 이동할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이동경사로 통해 이동할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이동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내 제도 필요

6.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중요성 의식 확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교육제도 개선과 안전보건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CEO 안전교육 & 재해 예방 캠페인 실시하고 있음 ○ 공사 내에서 취급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MSDS 등록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실시함 ○ 공사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건강검진 이외에 추가 검진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 상담을 운영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를 세분류하고 분류기준에 따라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보완필요. 공사 직원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작업은 수행하지 않으나 수변도시 매립지에 파견되어 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매립공사가 수행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근무자의 업무 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상태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아차사고 신고제)

6.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서 정한 요양비 이외에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하여 업무상 질병 뿐만아니라 재직 중 발생 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운영현황)

- 공사는 공정거래 확산 추진 계획에 따라 도급사의 갑질 근절 이행 요구하고 있음
- 공사는 계약상대자인 용역 및 공사 현장 직무 관계자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파악을 위하여 분기별 설문조사(갑질, 폭언 등 관련)를 통해 매 분기 모니터링 조치를 하고 있음
- 공사의 경우 물리적 보안담당 근무자는 없으며 공사를 출입하는 이해 관계자의 안내를 지원하는 전담 안내직이 담당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하도급사와 하도급 근로자 권리향상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공정거래 확산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 인권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공사는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교육을 통해 인권보호 준수 인식개선 확산

(권고의견)

- 공사는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활동을 위하여 “하도급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나 공사의 실천의지를 협력사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 등 행사가 필요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2	모니터링 실시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평균	
			87.5

□ 분야7. 항목별 결과

7.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협력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체 근로자 권리보호 신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공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공사는 협력업체에게 인권보호 준수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의 준수와 미이행 결과에 대한 공사의 방침을 이행 할 수 있는 업무절차가 수립되지 않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담당자가 계약 전 협력사의 부정당업자 정보 조회와 결과에 따라 계약 업무에 반영하고 있지만, 공사가 요구하는 인권보호 준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협력업체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 수립할 것을 권고

7.2) 모니터링 실시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청렴 반부패 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사와 계약업체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협력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수행하지 않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에서 반부패 관련 모니터링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 보호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함 ○ 공사의 주기적인 인권침해 모니터링 결과 갑질 등 피해를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공사의 행정 처리 기준 수립과 협력사에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시정결과에 따라 계약 유지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할 것을 권고함

7.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를 방문하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안내를 담당하는 안내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부터의 고충처리 상담과 교육을 실시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운영현황)

- 공사는 토지의 수용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수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면담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을 실시해왔음
- 공사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는 주요업무인 토목공사 관련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시공사에 관련된 사안이며, 공사와 관련한 특허는 인터넷 홍보 시 사용하게 되는 graphic, 사진의 사용권 등에 한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한 수용을 배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상 및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의 경우, 시공사인 건설·토목회사의 영역이며,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의 사용권은 홍보대행업체의 영역이어서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분야8. 현지주민 인권보호			
			
No	항 목	계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00.0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0	
평균		100.0	

□ 분야8. 항목별 결과

8.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의 사업 중 고군산군도 관광사업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큰 인权이슈가 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공유지에서의 시공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인권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주민의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검토하고 있음○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지만 수용 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면담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협의를 앞두고 있음○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찾는 것은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요소이며 정당한 보상,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주자 보호 등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8.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의 주요업무인 토목공사 관련 특허권은 시공사의 영역이므로 공사와는 무관하며 홍보 시 사용하게 되는 graphic, 사진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권에 한정하지만 이도 홍보대행사의 영역이며 공사는 홈페이지 제작 시 권리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 분야 9. 환경권 보장

(운영현황)

- 공사는 환경영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환경영영 추진계획 수립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관련 법규 및 ISSUE를 수집하고 반영함
- 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있지는 않음
- 공사는 새만금청과 협업을 통한 자문단 환경분야 위촉 운영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환경 전문심의위원을 위촉하여 환경 정책 개발에 대한 협의체 운영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환경영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영영 추진계획과 환경영영시스템(ISO 14001) 인증 계획 수립함
-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환경영향평가 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함

(권고의견)

- 공사의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의 미래상의 실천 의지를 반영한 각 부서별 환경 실천 활동은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 임직원들의 환경의식을 반영한 사회적 환경운동 참여와 공사의 환경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영영 정책을 총괄운영 할수 있는 주관부서에 역할 부여가 필요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유지	90.0	
2	환경정보의 공개	83.3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0	
4	비상계획수립	90.0	
		평균	91.2

□ 분야9. 항목별 결과

9.1) 환경영영체계 수립 및 유지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및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관련 법규 및 ISSUE를 수집하고 반영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9.2) 환경정보의 공개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새만금개발청과 협업을 통한 자문단에 환경 분야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환경 전문심의위원을 위촉하여 환경 정책 개발에 대한 협의체 운영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공사 경영 활동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 이해 관계자와 공유 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공사의 사업 수행 중에서 환경 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희박하나 향후 매립지 공사 수행 등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정보 공개 프로세스 필요성 검토 필요 (21년 11월부터 매립 예정)

9.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영향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사후관리하도록 운영 중 ○ 환경영향 평가 후 사업 실행하면서 발생 되는 환경 문제는 발생 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환경문제 가능성이 도출될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선제적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적기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의견 없음

9.4) 비상계획수립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중이며 공사의 비상대응 매뉴얼 등을 통해 위기 전파 사고 대응 체계 수립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 분야 10. 소비자 인권보호

(운영현황)

- 공사는 소비자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 공사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및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에 필요한 조치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IDS, IPS), 개인정보 암호화, 문서유출방지 솔루션 등의 기술적 · 관리적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의 경우 소비자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매립 공사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보호를 위한 제도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내부관리규정에 따라 다수의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0	
2	제품 결함 시 조치(N/A)	N/A	
3	고객 사생활 보호	100.0	
평균		100.0	

분야 10. 소비자 인권보호

No	항 목	계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0
2	제품 결함 시 조치(N/A)	N/A
3	고객 사생활 보호	100.0
평균		100.0

□ 분야10. 항목별 결과

10.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의 경우 소비자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주요사업으로는 '새만금 매립공사'만 진행 중으로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당사항 없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10.2) 제품 결함 시 조치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없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10.3) 고객 사생활 보호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운영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의 정보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등 외부 유출 방지 활동 수행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 분야 11. 직장 내 인권 보호

(운영현황)

- 공사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상담 및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였음.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조사(갑질, 폭언 등 관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공사는 매년 연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함
- 직무교육 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동참하고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환경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만들고 직원 및 신규직원, 인턴직원 대상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예방조치가 우수함. 고충처리 신고센터는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공사는 성희롱·성폭력 매년 1회 이상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니터링에 신경쓰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두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우수한 편임
- 공사는 장애인 근로자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차별요소를 억제해왔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 장애인 고용은 유지하고 있고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용 경사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 장애인 근로자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을 위한 개선 활동을 잘 진행하고 있음

(권고의견)

-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대비 장애인 근로자의 차별진단이나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는 부족한 편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

결과 그래프		점수표	
		No	항 목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3	장애인 근로자 보호
		평균	
		93.3	

□ 분야11. 항목별 결과

11.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만들어 예방조치를 충실히 행한 점이 우수함○ 직원은 전직원 교육을 위해 임직원 및 신규직원, 인턴직원 대상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시행하고 있음○ 고충처리 신고를 위해 홈페이지와 그룹웨어 등 다양하게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11.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및 전직원 배부하여 사건 발생시에도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됨○ 공사는 현재 5명의 고충상담원을 두고 있으며, 교육실시를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공사는 매년 연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가 우수함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고의견 없음

11.3) 장애인 근로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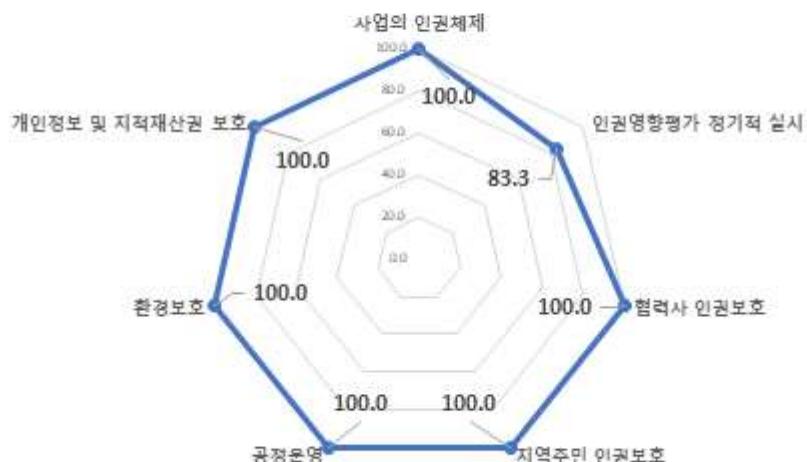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는 전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음◦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비율 준수 이행 중이며, 장애인 화장실, 훨체 어용 경사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진단이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한 편임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차별 실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모니터링)를 실시에 대한 검토를 권장함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가) 종합점수 : 97.4점 (38점 중 37점 획득)

- ▶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97.4점으로 우수한 상태
- ▶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항목의 일부 보완 사항 필요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점수



No.	사업	점수			
		배점	조정배점	득점	환산점수
1	사업의 인권체제	6	6	6	100.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6	5	83.3
3	협력사 인권보호	6	6	6	100.0
4	지역주민 인권보호	4	4	4	100.0
5	공정운영	4	4	4	100.0
6	환경보호	6	6	6	100.0
7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6	6	6	100.0
총점		38	38	37	97.4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나) 주요사업 점검 집계결과

- 총 19개 항목 중 예 18개, 아니오(미실시) 0개, 보완 필요 1개, 정보없음 0개, 해당없음 0개로 집계됨
 - (미 실 시) 없음
 - (보완필요)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항목 일부 보완 필요
 - (정보없음) 없음
 - (해당없음) 없음
- (개선과제) 지표별 미이행 과제(‘보완필요’)에 대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예’로 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잠재적 인권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함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

No.	사업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사업의 인권체제	3	0	0	0	0	3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2	1	0	0	0	3
3	협력사 인권보호	3	0	0	0	0	3
4	지역주민 인권보호	2	0	0	0	0	2
5	공정운영	2	0	0	0	0	2
6	환경보호	3	0	0	0	0	3
7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3	0	0	0	0	3
합 계		18	1	0	0	0	19

(다) 주요사업별 상세 평가

◆ 새만금 매립사업

(운영현황)

- 공사는 주요사업인 새만금 매립사업의 핵심이해관계자는 시공사, 감리단, 하도급사로 인식하고 있음. 지역주민, 환경단체와의 관계성은 적은 편이나 매립 공사 주변 해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매립공사의 현장관계자인 시공사, 감리단, 하도급사 간 소통 및 상생협력 여건 마련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일방향 소통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양방향 다채널 소통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음
- 공사는 매립사업 참여 직원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의 예방, 감소, 치료를 위한 지원으로 매년 1회 건강검진 실시 이후, 유소견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매월 1회 건강상담의 날 운영을 통해 해소하고 있고 공사 직원이 지역 주민을 응대하는 민원업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일은 비교적 적어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제도는 없음
- 또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친수성, 신기술, 신공법 도입 등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다수 측정 포인트에서 수질data 관리)을 하면서 매립공사로 인한 수질변화로 주변 지역주민의 어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오탁방지막 2중 설치 등)을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음

(평가요약)

- 공사는 매립사업의 핵심이해관계자로 시공사, 감리단, 하도급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후순위의 지역주민은 농림수산부에서, 환경단체는 환경부에서 대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립사업의 시행사로서 계획대로 환경 친화적 시공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매립공사 주변 해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수질관리를 하고 시공사와의 양방향 다채널 소통간담회를 시행하며 시공 현장에 대한 환경영향을 지속 관리하고 있음
- 공사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갖추고 불만사항, 인권침해 사항을 청취, 접수하고 있으며 구제절차까지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인

권침해 사항이 접수된 적은 없음

- 공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특별히 관심을 받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희생이 강요되거나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도 계절별, 악천후 시 구분하여 예방 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원업무 가중으로 인한 감정노동스트레스 치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공업무를 전담하는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도 공사에게 일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음. 공사 임직원의 갑질 방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협력사가 신고할 수 있는 공사 홈페이지 상의 신고채널을 열어두고 있음
- 공사는 매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어업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감시하고 상시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공사 차량으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공사는 매립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공유해야 하는 정보를 현재 총 22개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대응하고 있음. 매립사업은 향후 매립지 위에 들어설 건설, 토목 공사를 예상하여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음
- 매립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탁수 방류를 최소화하는 시공, 주요 물길 목에 수질오염 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또한 수해방지를 위한 수문조절 등 풍수해 방제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실행하고 있음
- 사업추진시 획득하는 개인정보는 이상 없이 관리되고 보호되고 있으며 법규 및 내규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를 구하거나 정보의 폐기를 실시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시공사의 영역이므로 공사와의 관계성은 없음

(권고의견)

-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보상, 매입을 위한 대민 업무가 예상되고 심신 피로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식적인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즉, 전문 심리상담소 또는 정신과 병원에서의 상담 및 치료지원을 공식화하며,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비밀유지 원칙을 지키며 지원할 것을 권고함

결과 그라프		점수표	
No	항 목	계	
1	사업의 인권체제	100.0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83.3	
3	협력사 인권보호	100.0	
4	지역주민 인권보호	100.0	
5	공정운영	100.0	
6	환경보호	100.0	
7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100.0	
평균		97.4	

IV

인권경영 주요 개선과제

□ 기관운영 개선과제

- 공사의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9개 개선과제를 도출함

분야	항목	개선과제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① 인권경영규정에 “정기적인 개정검토” 문구를 명시하여 공식화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② 표지판에 현재 위치와 피난 대피로 표기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③ 임산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직, 근무지 변경 등에 대한 상담과 업무 변경 할 수 있는 사내 절차 운영 ④ 장애인 방문시 도움 요청에 대한 안내제도 마련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 실시	⑤ 유해화학물질 종류 세분류 및 관리기준 적용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⑥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협력업체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 수립
	모니터링 실시	⑦ 인권보호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환경권 보장	환경정보의 공개	⑧ 공사 경영 활동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
직장내 인권보호	장애인근로자 인권보호	⑨ 장애인 차별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주요사업 개선과제

- 주요사업 영역별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함

사업분야	개선과제
새만금 매립사업	근로자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식적인 지원을 준비

V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

□ 인권경영 SWOT 분석

내부역량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외부환경		■ 노시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 임직원의 인권경영 참여의지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한 인권경영 관리의 어려움 ■ 인권침해 구제 내부역량 취약	
Opportunity	기회	(SO) 역량강화		(WO) 기회포착	
■ 현 정부의 인권경영 추진의지 - '18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공표 - '21년 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성평등 해설서 발간	■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인권경영 ■ 용역사, 협력사에 인권경영 확산	■ 인권침해 구제절차 강화 - 관계자 전문성 확보 - 2차피해 방지 세부 대책			
Threat	위협	(ST) 관리강화	(WT) 약점극복		
■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 - 벤치마킹 사례, 가이드라인 부족	■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인권경영 영역 외주화	■ 인권경영 전문가 양성 - 외부전문 교육기관 연계 - 일부 취약영역의 실태조사 실시			

□ 2021년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

- 인권경영을 일상의 문화로 구현하기 위해 공사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환경과 필요에 맞는 고도화를 통해 인권존중 기업문화 실현

	2019~2020년(자체)	2021~2022년(외부)	2023년(외부)
지향점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정착	인권경영 확산
추진 과제	<p>1.사업전반 인권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체계 정비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사업 전반으로의 인권 역량 강화 	<p>1.임직원의 임권의식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내재화 <p>2.인권경영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교육 - 인권경영 캠페인 <p>3.인권영향평가 참여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와 공동 수행 - 이해관계자 패드백 수집 - 평가 객관성 중대 	<p>1.인권경영 워킹그룹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공유 및 정보공유 - 정기 네트워킹 모임 활성화 <p>2.이해관계자별 구제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별 내외부적인 구제조치 확립 및 전문성 강화 <p>3.인권영향평가 사업관계자에 대한 대응조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평가 및 결과별 세부 대응조치 마련